

일반
논문

민주화 이행기 5·18에 대한 부인 전략과 이행기 정의

곽승연 _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논문요약

이 연구는 5·18 당시 국가 공식담론이었던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이 이후 이행이라는 담론 환경 변화에 조응해 어떻게 변모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18 당시 국가의 부인 담론은 사건의 성격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으며, 이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원인은 지역주의담론과 배후론으로 구성됐다. 둘째, 민주화 이행기 가해자들의 사건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폭동'으로 수렴된다. 셋째, 담론 내적 차원에서 이 시기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은 공식, 비공식 담론 영역에서 제기된 여러 쟁점 중 초기 진입과정에서의 과잉 폭력만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전략이 유일하다. 결론적으로 민주화이행기 가해자들의 부인이 '폭동'담론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자원은 이행기 과정에서 제시되는 근위대 문제(praetorian problem), 즉 '노골적으로 인권탄압을 저지른 권위주의 관료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 **주요어** : 5·18, 가해자, 부인 담론, 반인권범죄, 이행기 정의

1. 문제제기

이 연구는 민주화 이행기 5·18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과 그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¹⁾ 즉 민주주의 이행이라는 구조적 환경 변화에 조응해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했으며, 그 같은 담론 전략이 출현할 수 있었던 정치사회 내 구조와 맥락을 추적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 이를 통해 5·18 당시 국가의 공식 담론이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단계적 변화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는 가해자들의 부인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주지하듯이 그동안 5·18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언론학, 문학, 예술, 문화 등 영역별, 부문별로 적지 않은 수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이 같은 연구 성과의 빈곤은 국가폭력의 주도자나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가해의 양상, 원인, 결과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해 온 서구의 연구 경향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5·18의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증언 청취, 기록의 부재와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가해의 범주에 따른 조사가 여전히 현 재진행형임을 고려할 때 어찌면 당연한 귀결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학살 사례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학살의 동인과 메커니

1) 이 연구는 광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 5·18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 중 5·18을 사용한다. 이는 이 연구의 주된 논지 중 하나가 5·18의 성격을 둘러싼 공식 담론과 비공식 담론의 충돌을 다루는 것에서 기인한다.

즘의 규명, 더 나아가 사건 자체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정당화의 고리를 끊는 주요한 한 축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5·18 가해자들에 대한 연구, 그중에서도 가해자들의 반인권범죄에 대한 부인(denial)의 내용, 전략에 대한 구체적 분석의 미비는 5·18 연구에 있어서 지나칠 수 없는 공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주화를 경과하며 본격적으로 생산된 시민사회 내부의 5·18에 대한 폄하는 2019년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라는 명명으로 정치사회에서까지 하나의 공적 담론으로 확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5·18의 가치가 국가기념일 지정, 국립묘지 승격, 국가유공자라는 일련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국가 공식 담론으로 포섭, 전유되어 온 이면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온 부인의 맥락과 기원에 대한 천착을 요구한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민주화 이행기는 5·18이 국가 담론으로 제도화되는 결정적 분기점이자 시민사회 내 보수 분파에서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그룹의 5·18 부인 담론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²⁾ 즉, 이 시기는 5·18을 여전히 폭동의 의미 구조에 가둬야만 하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개인과 세력들의 발흥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2) 이 글은 전두환 정부를 권위주의 시기로, 노태우, 김영삼 정부를 각각 민주화 이행기 1, 2기로 파악한다. 이 같은 구분은 헌팅턴의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한 정치사회적 제도 도입’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제도’를 이행의 기준으로 삼는 통상적인 학계의 기준과는 다른 시각이다. 즉 한국의 이행과정은 ‘이행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기를 경과하며 마련되었다. 새로운 민군관계 수립을 위한 ‘하나회 체결’, 권위주의시기 반인권 범죄를 자행한 관료의 처리를 위한 ‘5·18 특별법’ 제정 등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헌팅턴 2011, 296-325).

기원이자 권위주의 시기 자행된 반인권범죄의 상징적 존재인 5·18에 대한 가해자들의 태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결절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5·18 당시 국가의 공식 담론으로 규정된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이 민주주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변동의 과정에서 도래한 담론 환경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과 재생산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활용될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1980년 5·18 당시 계엄당국, 군 등에서 생산된 공식문서,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속기록,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에서 출간한 5·18 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시리즈,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펴낸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2007),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2018) 등이 중심이며, 이외 5·18 이후 가해자 관련 신문, 잡지 등 언론보도와 가해자의 증언, 수기가 보조적으로 이용된다.

2. 이론적 자원과 연구방법

앞서 밝혔듯이 5·18 가해자들의 부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는 매우 희소한 편이다. 5·18 연구 영역에서 비교적 근년에 들어서서 제출되기 시작한 이 주제의 연구 성과는 오승용(2012), 김보경(2013), 김윤철

(2021) 등이 있다. 오승용(2012)은 5·18의 정치적 제도화에 따른 진실 규명의 도정에서 1980년 5월부터 1989년 광주청문회, 1989년 광주청문회 이후부터 1998년 특별법 및 재판까지 시기,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시기 등 매 시기마다 제기된 부인의 주요 내용과 부인 주체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5·18의 부인 주체가 1996~1997년 전·노 재판 이후 정치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이전되었음을 밝히고, 2000년대 이후 5·18 왜곡 담론의 주요 생산주체인 뉴라이트 계열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규명한 성과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왜곡된 재생산과 부인의 정치학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현실 정치의 주요한 권력 자원임을 예시한 사례라 볼 수 있다(오승용 2012, 23-64). 뒤이어 제출된 김보경(2013)의 연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과거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들과 지지자들의 부인 양상을 스탠리 코언의 부인이론과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활용해 분석한 성과로 이 같은 부인이 양산된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구현되지 못한 이행기 정의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김보경 2013). 한편 김윤철(2021)은 5·18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지속되는 주요한 환경으로 '정치 균열과 정당체제의 작동방식과 성격'을 지목한다. 구체적으로 '의사(pseudo) 진보-보수 양당 우위 체제' 정치구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반민주 균열의 조기 해소, 지역 균열의 장착과 변용, 진보-보수 균열의 제약과 변형적 동원'과 함께 진행된 '5·18이 과거화·형식화(의례화)-지역화·고립화-추상화·정파화의 결과'라는 주장이다(김윤철 2021, 289-316).

이처럼 앞선 논의들은 5·18의 왜곡 구조와 양상, 생산 주체, 그 같은 현

상이 출현하는 정치사회적 원인을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의식의 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가해 주체의 행위자적 차원에 주목해 5·18 당시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했던 폭력의 당사자가 이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이데올로기적 폭력의 구체적 양상과 구조, 이의 변형, 보다 근본적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의 공식 부인 담론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내 한 분파의 담론 권력으로 이전되는 경로와 효과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 연구의 이 같은 빈 공간에 주목해 민주화 이행기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이 재생산되는 담론 외적 환경을 국가 공식 담론의 변화 과정과 이에 대한 가해자들의 대응을 통해 추출하고, 가해자들의 부인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5·18 당시 국가 공식 담론과 어떤 차이와 연계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활용될 이론적 자원과 방법론은 비판적 담론 분석과 코언의 부인이론이다.

먼저 이 연구의 이론적 자원인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을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 이는 특정 담론은 그것이 발생하게 된 상황, 제도, 사회구조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며, 반대로 담론 자체가 사회를 유지, 재생산, 변형시키는 도구라는 통찰에서 비롯된 시각이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의 물질성과 사회 여러 영역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시각을 견지하며,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성을 갖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비판적 담론 분석이 담론 연구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점은 ‘담론의 사회적 환경’이며, “비언어적 형태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갈등의 맥락 속에서 특정 담론의 생산, 재생산, 위기에 대

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목표가 된다(신진욱 2011, 10-45; 곽송연 2015a, 113-114).

이 같은 담론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에 대한 천착이 기반이 된다. 어떤 정치적 담론이나 사회적 담론은 담론 실천이라는 통로를 통해 ‘사물을 재현하고, 사람들을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생산,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Wodak 1996; 신진욱 2011, 10-45). 비판적 담론분석의 이러한 관점은 맥락(context)의 중요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담론과 사회는 직접적 연결의 측면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중재’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Van Dijk 2009). 즉 텍스트와 텍스트의 해석적 실천만큼이나 강조되는 지점이 그 같은 해석이 생성된 사회적 맥락이라는 논지다(Fairclough 2001; 곽송연 2015a, 113-114). 이를 민주화 이행기 5·18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 분석에 적용하면, 5·18 당시 국가의 공식 담론으로 출현했던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이 민주화 이행이라는 정치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 위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 담론 외적 환경을 고려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부인의 양상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는 5·18 당시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에 대한 부인 전략과 그 내용을 분석하고, 민주화의 경로에 따라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코언의 부인이론을 활용한다. 코언은 학살의 실행과 추후 정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담론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부인(denial) 담론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은 ‘전면적 부인(literal denial)’, ‘해석적 부인(interpretive

denial), ‘함축적 부인(implicatory denial)’이라는 세분화된 담론 전략이 활용된다(코언 2009).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전면적 부인’은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미안마 군부의 학살 부인이나 아르메니안 학살에 대한 터키의 대응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해석적 부인’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 다시 말해 사건의 발생 자체는 부정하지 못하나 사안의 의미를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사건을 학살이나 반인륜범죄가 아닌 새로운 범주로 끌어들이 합리화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나치가 유대인 절멸을 기획하며 사용한 ‘청소’, ‘소독’, ‘적절한 취급’, ‘최종 해결’ 등의 완곡어법, ‘제3세력’이나 ‘불순분자’, 오랜 편견에서 비롯된 갈등이 그 같은 불유쾌한 일을 발생시켰다는 논리에서 나타나는 책임의 부인 등의 기법이 있다. 셋째 ‘함축적 부인’은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함의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정당화를 꾀하는 전략이다. 주로 ① 위대한 선이나 신성한 사명으로 정식화된 신화적 정의, ② 맥락화, ③ 공리적 편의적 필요성 강조, ④ 피해자의 존재 부인, ⑤ 자신한테 유리한 방식의 비교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가해자들의 담론 전략에 대한 체계적 해체는 당대의 폭력을 부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한 공식 담론의 정당화 패턴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이 점이 있다(곽송연 2015b, 396).

이에 따라 뒤따르는 3장에서는 5·18 당시 국가의 공식 담론이었던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을 약술하고, 4장에서는 이때 생성된 부인 담론의 주제들이 민주화라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

과 재생산의 맥락을 살펴 본 다음, 이 시기 제기된 사건의 핵심 쟁점별로 이용되는 가해자들의 담론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 연구의 의의를 후속 연구와의 연계 속에서 가늠한다.

3. 5·18 당시 국가의 부인 전략과 그 성격

5·18 당시 국가의 부인 전략은 사건의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해석적 부인 전략의 총체적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즉 광주 일원에서의 폭동은 있었으나 항쟁이나 민주화운동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국가위기를 군과 계엄 당국의 효과적인 대처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건 규정에 부인의 핵심 전략이 압축되어 있다. 이 같은 관점은 사건에 대한 명명, 즉 ‘광주사태’라는 명칭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사태(事態)라는 용어는 본래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라는 중립적인 어휘이지만, 기실 한국현대정치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일컫는 명칭으로 쓰여 온 의미는 ‘대규모의 인명 손실이나 물질 피해를 동반한 재난이나 혹은 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국가적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사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에 가까웠다. 4·3사태, 여순사태, 부마사태, 사북사태, 12·12사태 등의 용례가 대표적이다. 5·18은 사건의 발발 시점부터 1988년 제도화의 첫발을 댄 ‘민주화운동의 일환’까지 ‘사태’가 공식 명칭이었으며, 그 의미

는 ‘폭동’, ‘난동’, ‘약탈’과 ‘방화’, ‘무법천지’의 시간이었다. 5·18에 대한 이 같은 국가의 성격 규정은 당시 사건의 발발과, 전개, 종결, 이의 원인을 집약한 1980년 5월 31일 계엄사의 공식 발표문의 ‘광주폭동사태’라는 직접적인 호명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라 다음에서는 ‘광주사태에 대한 계엄사 발표’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5·18 당시 국가의 부인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곽송연 2015b, 397-405).

1980년 5월 31일 자로 발표된 계엄사의 담화문에 따르면, 5·18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조정”을 통해 “지역감정”을 촉발, 군중심리의 폭발로 유도하여 최악으로 상황으로 몰아넣은 “9일간의 광주폭동사태”다. 다시 말해 사건을 사태로 변전시킨 주요 행위자는 ‘배후’이며, 이같이 고의적으로 획책된 폭동이 격화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평소의 원념, 곧 “지역감정”을 추동한 유언비어라는 논법이다. 즉 국가가 사건의 본질을 부인하는 핵심적인 담론은 ‘배후론’과 ‘지역감정’, 즉 지역주의담론이라 볼 수 있다. ‘제3세력’이나 ‘불순분자’, 오랜 편견에서 비롯된 갈등이 그 같은 불유쾌한 일을 발생시켰다’는 책임의 부인 기법을 동원한 해석적 부인 전략의 정형화된 패턴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주의담론은 전남대학생들의 시위가 불특정 시민의 참여로 확산되고, 중국에는 일부 시민들이 무장까지 하게 된 현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평소의 원념인 지역감정’에 자극되어 ‘홍분’, ‘이성과 냉철을 상실한 군중심리’에 휘말린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위의 발생, 시민들의 대거 참여, 사태의 악화, 최악의 상황 등의 기초적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해석적 증거들은 호남지역의 오랜 편견인 ‘지역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부인 기법이다. 또한 지역감정과 함께 짝을 이루는 배후론은 실제 이의 실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함축적 부인 담론의 사용으로 더욱 강화된 부인의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공리적 편의적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식과 피해자의 존재 부정, 맥락화, 자기중심적 대비 등으로 나타나는 함축적 부인 담론이 ‘배후론’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리적 필요성은 “산야지대에 진지를 구축하여 장기 게릴라전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었고 도청 내의 거점에서는 엄청난 양의 티엔티 폭약을 장전하고 자폭 태세를 갖추는 등 더 이상 폭도들의 기도를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참화가 일어날 것이 예측”되었다는 긴박한 상황에 대한 묘사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배후 조종, 선동해 온 “김대중”이 본래 공산주의자였다는 만들어진 사실의 발명을 예로 들 수 있다. 불순분자, 고정간첩, 남파간첩 그리고 내란을 획책한 김대중으로 최종 지목되는 맥락화를 통한 안보 위기의 강조로 공공의 이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논리 구조다. 또한 피해자의 부정 기법은 “군 병력을 투입한 기습진압작전에서 쌍방 간에 큰 피해를 모면케 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으며 선량한 시민과 폭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효과적인 진압을 전개”했다는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1980년 5월 27일 상무총정작전이 전격 실시됐던 날,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고 있었던 시민들은 ‘폭도’였으며, 이 군사작전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으니 그로 인한 희생은 정당했다는 주장이다(경향신문 1980/05/31).

한편 국가에 의해 사태를 폭동으로 변전시킨 ‘배후’로 지목된 대상은 항

쟁의 시작부터 군의 무력진압으로 일단락된 이후까지 3개의 대상으로 변화한다. 1980년 5월 21일 오전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 학생 및 깡패 등 현실 불만세력”, 당일 오후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 5월 31일 “북괴의 고첩과 이에 협력하는 불순분자들”, 그리고 “대중선동, 민중봉기, 정부전복을 위해 학생소요를 배후조종한 김대중”이다. 이 중 결국 국가전복을 획책한 김대중과 그의 추종자들”로 정리된다(최정운 1999, 31-32). 첫 번째 대상인 “학생과 깡패 등 불만 세력”은 이미 발생한 유혈 진압과 살해를 부정하고 격화된 시위의 책임을 불만세력에게 미루는 함축적 부인 전략의 기초적 기술이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시점까지는 적어도 배후로 의심되는 대상이 국민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이후에 생성된 배후와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 5월 21일 집단 발표 직후 공표된 두 번째 담화문에서 갑자기 등장한 “불순인물과 고첩들”은 국가 전복을 위해 암약해 왔던 공인된 적이라는 의미에서 수십 년 동안 내면화된 배제적 이데올로기인 반공주의와의 접합을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발표의 명분을 축적하고 ‘우리 사회에 익숙한 경계지의 적’을 통해 폭력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 이후 1980년 5월 31일 3번째 담화에서 사태의 ‘배후’는 “대중선동, 민중봉기, 정부전복을 위해 학생소요를 배후조종한 김대중”으로 비로소 전환된다. 앞선 담화에서 그 실체가 확정되지 않았던 모호한 무리였던 불순인물과 고첩이 호남 출신 유력 정치인 김대중으로 구체화되면서 사회 혼란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이 강조되는 맥락화 기법이다. 즉 “북괴의 고첩과 이에 협력하는

불순분자들”과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소요 사태를 배후 조종”해 온 것으로 확정된 김대중의 등장은 그를 ‘내부의 적들’의 최정점으로 묘사하기 위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 7월 4일 발표된 계엄사의 최종 담화는 이러한 전략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 담화에서 김대중은 “집권욕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사조직인 민주연합 집행부에 복학생을 흡수, 학원조직에 연결시켜 서울대·전남대생 등에 총학생회장 선거자금 또는 데모자금을 지급, 자신의 출신 지역인 호남을 정치활동의 본거지로 삼아 다른 지역에 앞서서 학생시위와 민중봉기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광주사태가 악화되자 호남 출신의 재경(在京) 폭력배 40여 명을 광주로 보내 조직적으로 폭력시위를 주도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공표된다. ‘배후 조종’으로 국가전복을 꾀한 내부의 적이 ‘호남’ 출신이었으며, 사태 변전의 계기는 권력 추구라는 사적 욕망을 위해 호남을 근거지로 삼아 혼란을 꾀한 유력 정치인의 내란 음모에 지역민들이 부화뇌동한 결과라는 의미구조이다. 배후론이 내포하는 의미는 결국 지역주의였던 것이다. 이는 5·18 당시 국가가 지목한 항쟁의 원인이 배후론과 지역주의론으로 표상된 해석적 부인 담론과 함축적 부인의 체계적 결합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곽송연 2015b, 397-405).

4. 민주화 이행기 5·18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과 쟁점

1) 민주화 이행기 5·18에 대한 국가 공식 담론의 변화와 이행기 정의³⁾

앞서 밝혔듯이 5·18은 민주화 이행기에 이르러 제도화의 길을 걷는다. 5·18이 제도화된 과정은 그것이 공개적으로 정치사회의 전면에서 등장한 첫 시점인 1988년 국회청문회를 필두로 이후 1995년 특별법 제정 및 12·12, 5·18 관련자 재판 시기,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민주화 이후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민주화 이행기에 5·18에 대한 국가의 성격 규정은 1988년 2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결성과 함께 총 세 번의 변화 과정을 갖는다.

첫 번째는 노태우 정부 시절 최초로 국가에 의해 제도화된 5·18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부 시절의 성격 규정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전두환 정부에 의해 수용된 6·29선언은 협약에 의한 민

3) 이행기 정의를 위한 국제센터(CTJ(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itional Justice)에 따르면, 이행기 정의는 폭력적인 갈등 상황에서 평화로, 또는 독재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 사회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유산에 대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https://www.ictj.org/> 검색일 2022.5.16). 논자에 따라 이행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이행기 정의를 제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제3세계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식민지모국의 반인권범죄, 뉘른베르크 법정의 개설로 상징되는 나치의 전쟁범죄 등에 대한 대응 과정을 포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행기 정의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소개한 아서의 정의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 라틴아메리카를 필두로 확산된 제3의 물결 기간 동안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법적 제도적 개혁'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녀는 전환기 사회에 필요한 정치적 대응으로 '독재자의 처벌, 기타 억압기구에 대한 조사, 국가기밀로 치부되었던 진실에 대한 공개를 중심으로 한 개혁'을 제시한다(Arthur 2009, 321 334-348).

주화(pacted transition to democracy)의 정치적 기점이 되었으며, 이후 직선제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구권위주의 세력의 상징적 존재였던 노태우 정부는 1988년 4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 발표된 ‘광주사태 치유 방안’을 좇아 ‘결과만으로 보면 폭동이라는 시각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학생,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입장은 핵심 문제 해결은 미흡한 화합만 강조한 태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동아일보 1988/4/1). 이처럼 실제적 진실에 대한 접근을 봉쇄한 상황에서 위로부터의 타협이 강제됐던 5·18에 대한 ‘망각의 정치’는 김영삼 정권 초기까지 일관되게 견지되었다.⁴⁾ 무엇보다 이러한 틀이 확정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민주정의당을 위시한 3당 합당으로 인한 정치사회의 세력 재편 결과였다. 즉 기존 지역주의담론이 호남의 영남에 대한 태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면, 3당 합당은 제도의 차원에서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지역갈등 구조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인위적 정계 개편의 산물인 민주자유당은 1990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4) 이는 일종의 ‘체계적 망각(organised forgetting)’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체계적 망각’은 커너튼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기억이나 망각이 사회적으로 체계화’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사회적 기억은 상당한 망각 작업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기억되는 것은 보다 큰 사회적 힘들에 의해 규정되고 규제되는 동시에 권위 있는 담론들을 통해 구조화되고 유지’된다는 기억의 사회적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조직적 기억 혹은 망각 전략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주체는 국가이며, 그것은 기억이 ‘비공질적인 국민이 사회적 응집력의 토대를 갖추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Connerton 1989; 엽미경 2001, 210-237; 허시 2009).

일환'이기는 하지만 진압 자체의 적법성은 고수하는 5·18로 제도화되는 경계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⁵⁾

민주화 이행기 2기에 해당하는 김영삼 정부의 5·18에 대한 성격 규정은 앞서 밝힌 대로 2번의 변화 과정을 보인다. 1994년 5월 김영삼 정부에 의해 발표된 '5·13 담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화 이행기 5·18광주에 대한 두 번째 성격 규정에 해당한다. 이 담화를 통해 김영삼 정부는 5·18을 민주정부의 기원으로 지목, 민주화운동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위상 정립은 상징 정치 차원에서의 의미만 있을 뿐 실제 5·18에 대한 법리적 현실적 해석은 6공화국 정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다. 즉 무력 진압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각계의 요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정쟁의 대상', '보복적 한풀이'로 일축하고 '잊지는 말되 용서하자'는 주문으로 제한하는 체계적 망각의 과정 역시 연속성을 띠는 모습을 보인다.

이 같은 김영삼 정부의 태도는 민주화 이행기 국가의 5·18에 대한 세 번째 성격 규정, 즉 1995년 1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헌정 질서 파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

5)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누락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2,000여 명에 달하는 구속, 구금, 연행자들과 군사재판을 받은 200여 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것에서 그 성격이 보다 분명해진다. 이들은 '총기난동이나 내란 행위 등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에서 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이것은 5·18 광주에 대한 무력 진압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명명된 법률의 본질적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신일섭 2005, 191).

던 5·18이라는 성격 규정에 따라 급격한 변화의 전기를 마련한다.⁶⁾ 5·18이 국가로부터 그 정당성을 공인받은 것이다. 이에 앞서 김영삼은 1995년 12월 12일 담화를 통해 5·18에 대한 ‘망각의 정치’를 철회하는 언급을 한다.⁷⁾ 이 연설문은 그동안 국가가 5·18을 ‘지역감정의 산물’, ‘정쟁의 대상’과 같은 사적 이해의 산물로 격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12·12와 5·18 당시 군 투입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물론, 역사적·전국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로 인정한 최초의 공식 언급이다. 또한 5, 6공화국, 그리고 문민정부를 지나오면서 연속성을 유지해 온 학살에 대한 체계적 망각, 즉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는 용서, 화해를 강요한 국가의 담론

- 6) 이 특별법은 ‘5·18 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5·18 관련 훈, 포장이 수여된 군인들의 상훈을 박탈하도록 함’으로써 5·18의 정당성이 항거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같은 날 통과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관련 공소 시효가 1993년 2월 24일까지 정지되도록 하는 한편, 12·12 및 5·18 주도자나 핵심 관련자 외에 부화뇌동자나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규정했다(한겨레 1995/12/20; 안중철 2007, 513-518).
- 7) 이 연설문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씨 비자금 4000억 원 은닉’ 폭로 이후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11월 30일의 12·12 및 5·18 특별법 제정 지시와 11월 30일의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발족, 노태우·전두환의 구속 수감과 헌법재판소의 5·18 불기소 처분 위헌 결정 이후 발표된 것이다. 이는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씨를 비롯한 22명이 12·12와 관련해 전두환·노태우를 반란 혐의로 고소한 사건, 1994년 5월 구성된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5·18국민위)가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35명을 5·18 당시 살상 책임을 물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1994년 10월 29일 ‘기소유예’를 처분, 1995년 7월 18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후 불붙은 각계의 전국적인 기소 촉구 운동의 성과이기도 했다(전재호 2007, 290-293).

정치에 종지부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5·18은 김영삼 정부에 의해 의욕적으로 추진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공식 기억 전략으로 수렴되면서 국가화, 제도화가 가속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곽송연 2014, 120-122).

이 같은 국가 공식 담론의 변화 과정은 담론 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주화 이행기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이 국가 공식 담론의 지위를 잃고,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한 부분의 권력 담론으로 위치 이동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⁸⁾ 바꿔 말해 이 시기는 민주화 과정에서 공식 영역으로 새로이 부상하는 5·18에 대한 새로운 성격 규정을 담은 대항 담론, 즉 항쟁, 학살,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부인 전략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1988년 국회청문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사회, 국가기구의 성원들은 부인 전략의 수립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수행했다. 이러한 활동의 양상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됐는데, 하나는 국가기구를 동원한 조직적 TF 설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들의 활동이 관련 문서의 조작, 폐기 정황과 부인 전략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관련자들의 증언 통제로 나아갔다는 것이다.⁹⁾ 이에 대한 근거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5·18민

8)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시기는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시민사회의 극우 분파에서 지지자들(supporters)의 부인 담론이 본격적으로 생산, 유통되기 시작하는 결정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부인 담론의 생산주체는 주로 극우언론과 지만원 등의 보수논객이었으며, 이들의 부인 담론은 민주화 이후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경유해 그 왜곡의 정도와 확산 속도 면에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띤다(김영기 외 2021, 5-40).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와 효과를 이행기 정의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학문적 천착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2018)’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구를 동원한 조직적 TF 설립은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 후 주요 이슈로 떠오른 5·18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설된 국방부 국회대책특별위원회(일명 511연구위원회), 보안사 511분석반의 활동 내역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국회대책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목표는 “모든 논의를 국회로 수용시켜 군의 입장을 밝힐 것”과 “관련 및 참고자료의 철저한 검토와 제시”였다. 이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 511연구위원회는 511상설대책위원회를 편성, 운영했으며, 총괄반, 계엄반, 법무/검찰반, 보안반, 조사반 등 체계적 업무분담과 범 정부차원의 자료 협조와 인력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특별대책위원회는 511연구위원회, 511상설대책위원회의 운영과 별도로 국방부 산하 각 기관과 부서별로 별개의 실무위원회를 편성, 운영했는데, 보안사, 육본, KIDA(한국국방연구원), 군사연구실 등이 해당되며, 특히 보안사가 운용한 511분석반은 안기부 등 여타

-
- 9)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5·18 당시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은 ‘폭동’이었다. 이후 7년여 동안 지속된 가해자들의 집권기간 동안 이 같은 성격 규정은 국가 공식 담론으로서의 위치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5·18 ‘진압작전의 불가피성을 위한 홍보대책 마련’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광주사태 백서’ 발간을 활동 목표로 삼은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인 일명 ‘80인위원회’를 설립 운영하였다. 따라서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을 위한 국가주도 TF 설립은 이 시기가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된다(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2018, 156-159).

행정기구의 업무 협조를 받았음은 물론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의 광주 특위와도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가해자들의 5·18 관련 문서의 조작, 폐기 정황과 관련자들의 증언 통제는 511연구위원회의 주된 임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자료가 2018년 공개된 기무사 존안 5·18자료(84-17권)에 포함된 1980년 5월 21일 7공수여단 상황일지다. 이 자료에 의하면 “13시 7분 도청 쪽으로 나는 총성 20여 발, 13시 30분 자위권 발동”, “13시 50분 도청 옥상에 무장 경계병 배치”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자료는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2018)’가 발간되기 이전 공개된 군 자료 어디에도 없었던 사라진 증거였다.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와 자위권 발동 시각을 부인하기 위해 폐기된 것이다. 또한 기무사 존안 같은 자료에 실린 11특전여단 62대대 이모 중령의 도청 앞 집단발포를 증언하는 체험 수기는 공개되지 못했으며, 31사단 군수참모 최모 중령의 수기는 누락, 공수여단장들의 과감한 진압 주장 등의 내용은 삭제되었다. 511연구위원회가 ‘광주사태 관련 증언대비 계획’에 의해 본인에게 통보, 재작성하도록 조치하거나 삭제, 누락시킨 것이다. 결국 국방부 국회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목표 중 하나였던 “관련 및 참고 자료의 철저한 검토와 제시”의 실질적인 내용은 증거자료의 왜곡과 관련자 진술의 왜곡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2018, 323-451).

한편 민주화 이행기 전반부인 노태우 정부 시기와는 다른 형태지만 5·18 특별법이 발효되고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역시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 고수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됐다. 국군보안사령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5·18 관련 핵심 군문서를 1980년 5월부터 보안사령관 비서실에서 별도 관리하는 한편,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된 자료들만 정보통신실로 이관 존안 처리해 왔는데, 1996년 이마저도 모두 소각, 용해 등의 방식으로 폐기 처분한 것이다(광주일보 2019/04/25). 또한 옛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작성한 ‘(예비역)대장 정호용, 5·18 당시 특전부대장 초청 오찬’ 문건에 따르면, 1994년 11월 28일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 당시 정부여당인 민주자유당 소속 현역 의원이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이 주재한 모임에 “고소·고발된 (5·18 당시) 특전사 대대장 9명 중 3명(예비역 소장 1명·예비역 준장 1명·예비역 대령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해 그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1996년까지 대부분 군내 요직에 포진해 있던 5·18 관련 지휘관들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한 기무사 문건에는 당사자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군 검찰 수사 내역의 축소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1995년 2월3일자 ‘군검찰부 5·18 관계 조사 진행 동정’은 “당초 소환대상이었던 56명의 참고인이 대대당 1-2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진압작전에 참여한 12대대 중대장 14명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있다(경향신문 2020/5/17). 그 결과 5·18과 관련해 기소된 군관계자는 전두환·노태우·이희성·정호용·최세창·박준병 등 6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된 박준병을 제외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인 내란 목적 살인 행위 역시 1980년 5월 27일 전남 도청 진압 작전 과정에 숨진 17명에 대한 것이 유일하다.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는 물론 여타 발포사건, 시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 민

간인 학살, 대검 사용 등 기타 잔학행위에 의해 사망, 부상한 시민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시기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이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행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부인 현상은 이행의 수준, 한계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동을 겪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장애물인 고문관 문제(torturer problem)와 근위대 문제(praetorian problem), 다시 말해 '노골적으로 인권 탄압을 저지른 권위주의 관료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응과 '정치에 대한 군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문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영역이다(현팅턴 2011, 298-325). 우리 사회의 경우 이 두 가지 이행 문제 중 전자에 해당하는 반인권행위의 직접 수행, 또는 이에 협조한 권위주의 관료에 대한 처리 문제는 1987년 이후 수십 년을 지나온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단죄 여부는 물론 정치사회의 중심 의제로도 다루지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전격적으로 단행된 하나회 척결 등 새로운 민군 관계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는 매우 다른 결을 보이는 이행 문제의 처리 과정이다.

달리 말해 1987년 6월항쟁 이후 도입된 '협약에 의한 민주화'라는 이행의 양식(mode of transition)은 시민사회에서 저항을 주도했던 부문이 배제된 채 사실상 여야 구 정치세력들의 카르텔체제로 귀결'됐고(강우진 미간행, 37), 이 같은 결박은 이행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사회와 국가가

구의 주요 부문에 반인권범죄를 자행한 권위주의 시기 관료의 견재로 자리 잡은 것이다. 결국 노태우 정부 시절 5·18의 부인을 위해 국가기구를 동원한 조직적 TF 설립, 관련 문서의 조작, 폐기와 관련자들의 증언 통제, 김영삼 정부 시절 5·18 관련 핵심 군문서의 폐기 처분, 군내 핵심 요직에 포진했던 당사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군 검찰 수사의 축소 등은 이 같은 미완의 이행기 과제를 직접적으로 예시하는 근거라 볼 수 있다.

2) 민주화 이행기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 분석

(1) 사건의 성격: 폭동 대 민주화운동

민주화 이행기 가해자들의 공식 부인 전략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건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폭동'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18 당시 국가의 공식 담론이었던 '광주폭동사태'와 같은 노골적 표현 대신 계엄군 일부의 초기 진압 과정에서의 과잉 폭력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양비론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1988년 청문회에서 공개된 사건의 실체를 일부 드러내는 파편적인 증언들, 사진, 영상 등의 증거자료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어 1995년 특별법 제정 이후 검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파악된다. 다만 가해자 중 최고 정점에 있었던 지도자 혹은 고위 간부 그룹은 5·18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해 공식적인 지휘체계 밖에 있었다는 논리를 들어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는 '합축적 부인'의 입장을 고수한다. 이에 따라 청문회와 1995년 특별법 제정 및 12·12, 5·18 관련자 재판 시기에 제기된 각 쟁

점에 대한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을 검찰수사기록과 511연구위원회에서 주도한 5·18 진상규명 대응자료 중 일부인 관련자의 체험 수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과잉 폭력 여부다. 5·18의 성격을 결정짓는 최초의 쟁점이자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계엄군의 과잉 폭력은 1988년 광주청문회와 1996년 검찰수사에서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이 사안에 대한 계엄군 측 부인 전략은 청문회와 511연구위원회가 주도해 남긴 체험 수기에서는 ‘전면적 부인’이 주로 활용되지만, 검찰 진술에서는 ‘해석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을 이용한 정당화가 주를 이룬다. 즉, 과잉 폭력 혹은 잔학행위의 행사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진압봉으로 때리고, 군화발로도 찼으며 ... 버스에서 야유와 소리를 질러 보초를 서던 초병이 몇 명을 끌어내 몇 대 때리고 무릎 꿇게 하여 지역대장이 교육을 시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생리상 몇 대 때리기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권승만 7특전여단 33대대장 진술조서, 1996년 1월 5일, 서울지방검찰청, 펜앤드마이크 2019/01/15).

“진압, 체포, 연행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있어 다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시위진압 과정에서 과잉진압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31사단장(정웅)의 명령이 시위자를 체포, 연행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행 과정에서 돌을 던지고 하니까 그에 반격해서 일부 과격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김일옥 7특전여단 35대대장 진술조서, 1996년 1월4일, 서울 지방검찰청, 펜앤드마이크 2019/01/15).

위 인용문은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경 전남대학교 앞에서 시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에 올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진압용으로 머리 등 부위를 때린다던가, 군화발로 찬다던가, 남녀를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힌 채 연행한다던가 하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과잉진압을 해 초기에 학생들만의 시위에서 시민들까지 합세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당시 최초 투입된 7공수 두 대대 현장지휘관의 진술이다. 이들은 당초 완강하게 부인하던 과잉 폭력 행사 여부를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몇 대 때리고” 등의 완곡어법과 “돌을 던지고 하니까 그에 반격해서 일부 과격한 면”, “심한 몸싸움” 등의 맥락화, 자신과 유리한 방식의 비교를 통해 ‘해석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사태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검과 화염방사기를 비롯한 중화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투입 대대장들이 시종일관 부정하는 전면 부인의 전략을 채택한다. “착검하지 않았고, 사용한 적도 없다”(안부용 11특전여단 61대대장 진술조서, 1996년 1월4일, 서울지방검찰청, 펜앤드마이크 2019/01/17)는 반발이나 “대검은 개인지급하면 분실과 사고의 우려가 있어 지역대별로 창고에 보관하여 출동장비에는 빠져 있는 게 상례”(박종규 3특전여단 15대대장, 육군본부 존안 역사자료, 1988년 2월 10-20; 펜앤드마이크 2018/12/09)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관련자들의 부인은 부상자와 목격자의 증언, 사

망자들의 사망원인을 기록한 검시기록, 착용한 채 위협을 가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 외에 “병력들에게 개인장비(M16, 대검, 진압봉, 방독면, 방석망, 철모)를 착용하게 하고”(김일옥 7특전여단 35대대장 진술조서, 1996년 1월4일, 서울지방검찰청, 펜앤드마이크 2019/01/15), “화염방사기, 가스분출기로 겨우 통로를 열어 쫓기듯 돌아왔다고 한다.”(박종규 3특전여단 15대대장, 육군본부 존안 역사자료, 1988년 2월 10-20, 펜앤드마이크 2018/12/09) 등 본인들 스스로의 진술에서도 부정되는 역설을 보여준다. 또한 「전교사상환일지」 ‘5.18. 20:15 대처상황 중 수습 및 작전’에 “7공수대 착검진압”이라 적시되었고, 7특전여단 서모 증사는 착용한 사진 자료의 인물로 직접 특정되기도 했다(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387-388).

두 번째 쟁점은 발포, 집단발포, 자위권과 발포명령과 관련된 사안이다. 5·18 기간 동안 발생한 계엄군의 발포는 최초의 시점, 규모, 양태, 명령의 존재 여부에 따라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인 주요 논란 사항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민주화 이행기 쟁점으로 부상했던 항목은 최초의 발포 시점은 언제였으며 그 횟수와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실탄 분배가 이뤄진 시점은 언제였으며 그 과정은 어떠한지 등 기타 여러 사안과 더불어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의 성격과 발포명령의 존재 여부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즉 시위를 위해 모인 대규모의 군중을 향해 군이 집중사격을 했는지, 그것이 명령체계에 따른 행위였는지, 만일 그와 같은 명령이 존재했다면 발포명령은 누가 내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사격명령을 내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순전히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원들

이 조건반사적인 사격, 그러니까 돌진하는 시위대의 차량에 압사 당할지도 모른다는 심한 공포감으로 인해 실탄을 삽입하여 발사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안부용 11특전여단 61대대장 진술조서, 1996년 1월4일, 서울지방검찰청, 펜앤드마이크 2019/01/17).

“그날 전남도청 앞 발포는 13시경에 이루어졌고 제가 자위권을 천명한 것은 그날 저녁 19시 30분경이므로 자위권 발동조치에 따라 발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희성 계엄사령관 진술조서, 1995년 12월12일, 서울지방검찰청, 조선일보사 1999, 137-138).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이에 대한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은 사건 직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전면 부인에서 발포 자체는 인정하나 방어적 차원의 ‘자위권’을 강조하는 함축적 부인 전략의 운용으로 변화한다. 즉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돌아서 나가는 시위대의 장갑차에 대한 계엄군측 사격을 시발로 뒤따라오던 차량과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집중사격이 이뤄진 상황을 “상대방이 먼저 총격을 가했다”, “시위대의 장갑차에 깔려 공수부대 동료가 사망했다”는 거짓 진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맥락화하고, 집단 발포 이전 실탄 분배의 과정이나 발포의 경위에 대해 우발성을 강조함으로써 ‘살해 의도’의 성립 여부를 비껴가고자 하는 방식이다(안부용 11특전여단 61대대장 진술조서, 1995년 2월13일,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실, 펜앤드마이크 2019/01/17). 이는 최종적으로 발포명령의 존재를 부인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군의 집단학살에 대한 법리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에서 비롯된 함축적 부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과 기타 여러 경로로 확인된 증언에 의하면, 최초 발포는 계엄군 쪽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방식은 집중 난사와 저격 임무를 띤 부대원들의 조준 사격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군인의 죽음은 후진하던 계엄군측 장갑차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사인 2019/05/15). 또한 2017년에서야 그 존재가 확인된 「기갑학교부대사」에 따르면, 문제의 1980년 5월 21일 오전 8시 전투교육사령부 관할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교사에 배속된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등을 포함한 광주, 전남북지역 일선 부대에 각 개인당 M16 90발, 권총 14발, 30LMG은 화기당 250발의 실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분배 완료했다(광주일보 2019/07/25).¹⁰⁾ 발포 명령의 존재와 불과분의 관계일 수 있는 이 문서의 발굴로 이 시기 완강히 고수했던 가해자들의 담론인 발포의 우발성, 상황논리, 비의도성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된 셈이다.

이어서 세 번째 쟁점은 민간인 학살의 진위 여부다. 논란이 된 살상은

10)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는 무장공비침투 등 북한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준비태세를 뜻하며, 가장 낮은 3등급(진돗개 셋)부터 1등급(진돗개 하나)까지 구분된다. 국군은 평소 ‘진돗개 셋’을 유지하다가 신원 미상의 인원이 군사경계지역을 침범한 정황이 파악됐을 경우 ‘진돗개 둘’을 발령한다. 진돗개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이나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돼 우리 군과의 전면전 돌입 직전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발령하는 최고 경계태세의 경계령이다. ‘진돗개 하나’ 상황에서는 군과 경찰, 예비군은 기본 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고 명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출동해 수색, 전투태세를 완비해야 한다(아주경제 2021/09/29).

5·18 기간 시위가 벌어진 광주 시내 중심가가 아닌 외곽 지역 민가와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에 주로 집중된다. 이는 계엄군 스스로 끊임없이 구분하고자 했던 양민과 폭도의 경계 없이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으로 그들의 법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적 쟁점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때문에 이 사안은 사태 초기부터 민주화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들이 가장 단호하게 부정하는 쟁점으로 전면적 부인 전략과 함축적 부인 전략이 동시에 실행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80년 5월 21일 광주 입구의 도로망을 완전 차단하는 ‘봉쇄 작전’ 이후 3공수여단이 작전을 수행했던 광주교도소 부근과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이 1980년 5월 22일부터 작전을 수행했던 광주시 지원동 버스종점 사건이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¹¹⁾

“5월 22일 낮 동안 무장 폭도들은 미원 광고판 방향에서 수차례의 공격을 감행했고, 앉아서 있다가는 당하기만 할 것 같아서 12대대와 13대대가 수차례의 파쇄공격을 감행하여 적을 제압했다. ...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폭도들이 모든 도로를 차단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박종규 3특전여단 15대대장, 육군본부 존안 역사자료, 1988년 2월 10-20, 펜앤드마이크 2018/12/09).

11) 이 외에도 주남마을 미니버스 학살과 송암동 오인 전투 후 주민들을 보복살해한 사건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의 제약과 가해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임을 감안해 일명 ‘교도소 습격사건’을 그 대표적 사례로 다룬다.

위 인용문은 일명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으로 알려진 광주-담양 간 봉쇄 지점에서 벌어진 민간인 살상에 대한 묘사다. 무장한 폭도들이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를 습격해 모종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맥락화로 5·18의 성격을 폭동으로 재정의하는 전형적인 함축적 부인 담론이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부상당한 시민은 폭도이자 적일뿐 피해자일 수 없다는 존재의 부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소 세 차례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파상 공격이 감행됐다면 교도소 습격은 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광주교도소는 높이 5m의 외부장벽에 둘러싸인 데다 감시탑과 건물 옥상 곳곳에 M60 기관총을 설치,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한 사격선수 출신 저격병이 배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입구 밖 50m 지점부터 장갑차와 소방차, 버스, 유조차로 물샷틈없이 방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20/05/17). 또한 2020년 확인된 군 내부자료 ‘(광주)교도소 지역 병력배치 요도(5·18)’에 사망한 사람들의 피격 위치는 교도소와 100m 이상 떨어진 광주-담양 간 도로 한복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작전을 실행했던 3공수 부대원들 역시 최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에서 “M60기관총을 설치, M1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해 광주교도소 주변 국도 차단 과정에서 최소 13차레 민간 차량에 사격,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사살했다”고 밝혔다(뉴시스 2021/05/16).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처럼 만들어진 ‘교도소 습격설’이 민주화 이행기에 이르러서야 공식 문건에 최초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작 5·18 직후 1980년 6월 작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보고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기록이 1988년

국회청문회에 제출된 국보위합동조사단 보고서에 ‘(80년) 5월 21일 12시 20분부터 익일 5시까지 시민군 광주교도소 공격’이라는 내용으로 추가 삽입된 것이다(중앙일보 2020/05/17).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국회특별대책위원회, 특히 511연구위원회의 활동 내역으로 추론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네 번째 쟁점은 사건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이는 결국 당시 5·18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통제한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였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 실질적인 발포명령권자와 현장에서의 지휘권 이원화 문제와 결부돼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이 쟁점 역시 민주화 이행기 동안 사건의 실제 규명을 요구했던 측의 주요 의혹 축임과 동시에 가해자들이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극구 부인하는 담론이다. 이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최정점에 있었던 이들은 물론 5·18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현지에 방문, 사건의 종료 시점까지 열흘 동안 광주에 머물렀던 특전사령관 정호용까지 최고지휘권자 혹은 고위 간부가 사태의 책임을 부인하는 전략은 본인들은 ‘지휘체계 밖에 있었으므로 다른 모든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무관하다’는 함축적 부인이다. 즉 지휘권 이원화는 없었으며, 1980년 5월 21일 오후 4시 이전까지는 현지 출동 특전사 → 31사단 → 전투교육사령부 → 2군사령부 → 계엄사령관으로, 그 이후에는 특전사에서 곧바로 전투교육사령부 지휘체계로 이어지는 공식 지휘계통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1998a, 630-665).

그러나 5·18이 무력진압으로 일단락된 후 신군부에 의해 강제예편 당

한 31사단 정웅 소장은 물론 실제 현장에 출동했던 특전사 대대장은 뒤 따르는 인용문처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식 지휘계통인 31사단과 전교사에 중요 사항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8b, 453-473;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414-416).

“저희 대대장들도 31사단장을 실질적인 지휘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와 있는데 사령관의 말을 듣지 힘없는 31사단장 말을 들겠습니까?”(안부용 11특전여단 61대대장 진술조서, 1995년 12월 31일, 서울지방검찰청, 펜앤드마이크 2019/01/18).

또한 당시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3공수여단 11대대 지역대장 신순용 전 소령은 “당시 공수부대와 31사단 등 일반부대는 무전 채널이 달랐고, 공수부대에만 따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광주일보 2018/07/18). 이에 대해 1995년 12월 검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의 진술은 눈여겨볼 만하다. 신군부가 5·18 관련 진압작전을 직접 간섭하지는 않았으나 ‘보안사 지휘계통을 통하거나 육본 참모들을 통해 관여했는지 여부’는 본인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다(이희성 계엄사령관 진술조서, 1995년 12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 조선일보사 1999, 140).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조사에서 시종일관 실질적인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웠으며, 수차례 발령된 계엄사령관 명의를 포고령마저도 보안사 요원들의 원안을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표 1>은 지금까지 논의한 민주화

〈표 1〉 민주화 이행기 5·18 가해자들의 사건 쟁점에 대한 부인 전략

사건의 쟁점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
과잉 폭력	광주청문회, 5.11위원회 주도 체험수기(전면적 부인) 검찰진술(해석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 대검과 중화기 사용은 전면적 부인)
발포, 집단발포, 자위권과 발포명령	전면적 부인 → 함축적 부인
민간인 학살	전면적 부인과 함축적 부인
사건의 책임 소재	함축적 부인

자료: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속기록,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1998a; 1998b),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조사결과보고서(2007),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2018), 기타 5·18 관련 신문, 잡지 등 언론보도와 가해자의 증언, 수기 등을 참조해 저자 작성.

이행기 5·18 가해자들의 사건 쟁점에 대한 부인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1〉에 따르면 민주화 이행기 5·18 가해자들의 사건 쟁점에 대한 부인 전략은 사건의 책임 소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면적 부인에서 함축적 부인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앞서 밝혔듯이 그 시점과 주체에 따른 차이로 파악된다. 우선 시점의 경우 사건의 쟁점이 잠재해 있던 1980년 당시는 전면적으로 부인되다가 이것이 공식 부상한 광주청문회 이후, 특히 1995년에서 1996년에 이르는 검찰조사에서는 주로 함축적 부인이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일정 정도의 사실을 기반으로 사건과 관련된 심리적 도덕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함축적 부인의 특성을 드러낸다. 또한 부인 주체의 경우 사건의 최종책임자로 지

목된 고위 간부와 최고지휘자 모두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함축적 부인의 입장을 취하는 반면, 현장지휘관의 경우 대검과 중화기 사용, 민간인 학살 같은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 한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 관련 문서나 공식 증거를 대부분 남기지 않는 학살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임과 동시에 ‘사건 자체가 지닌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곧잘 이용되는 함축적 부인의 성격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Parent 2016, 40).

(2) 사건의 원인: 배후론과 지역주의 담론

한편, 5·18 당시 사건의 성격을 폭동으로 제시한 담론 전략의 두 구성요건인 ‘배후론’과 ‘지역주의’ 담론은 민주화 이행기 각각 다음과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5·18 광주사태’에 보면 ‘나도 전두환이 누구인지 몰랐다’ 하는 대목이 나온다. 바로 이것은 광주사태가 순수한 민간항쟁이 아니라 권력의 내부까지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광주사태가 뿌리 깊은 영·호남의 지역감정의 문제라면, 그것은 지역감정의 문제로 노출시켜서 해결하여야 한다. 뒤에 숨은 뜻은 호남의 푸대접에 대한 반발이면서, 겉으로 주장하는 바는 광주사태의 해결이라면 피해보상만으로 광주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박종규 3특전여단 15대대장, 육군본부 존안 역사자료, 1988년 2월 10-20, 펜앤드마이크 2018/12/09).

위 인용문에 나타나듯 사건 발발 직후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배후론과 지역주의 담론은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전형적 해석적 부인의 열개대로 유지되고 있다. 시위 격화의 결정적 요인이 배후 조종이며, 그 배후는 ‘권력의 내부까지 잘 아는 사람’이라는 논리 구조다. 따라서 이 시기의 배후는 5·18 당시 불현듯 등장했다 사라진 북한이나 고첩, 간첩 같은 외부로부터 유래된 위협을 강조하는 논리는 배제된다. 또한 사건의 원인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부인 담론인 지역주의 담론은 진상규명 요구, 다시 말해 사건의 해결까지도 ‘호남의 푸대접에 대한 반발’로 폄하되는 견고한 틀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같은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은 국회청문회를 예비하는 조직적 준비 과정에서 수집된 위 수기뿐만 아니라 1995년 특별법 제정 이후 이뤄진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가해자들의 원인론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지속된다.

“광주사태는 조직적인 선동과 정치적인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오는 바람에 공권력이 마비될 지경의 폭동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김대중씨가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진술조서, 1995년 3월29일, 서울지방검찰청, 조선일보사 1999, 140).

즉, 민주화 이행기 5·18 가해자들의 담론은 사건의 성격은 ‘폭동’으로, 사건의 원인은 ‘이면’의 배후에 의한 지역감정 자극이라는 5·18 당시 국가의 부인 담론을 고수하고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5·18 당시 국가 공식 담론으로 체계화된 가해자들의 부인 전략이 민주주의 이행이라는 담론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조응해 어떻게 변형, 재생산됐으며, 이 부인 전략의 주요 생산자, 유포자인 가해자들이 이행 문제(transitional problem)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각 쟁점에 대해 어떤 담론 전략을 실행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18 당시 국가의 부인 담론은 사건의 성격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으며, 이의 근거가 되는 사건의 원인은 지역주의 담론과 배후론으로 구조화됐다. 이러한 담론구조는 불순분자나 오랜 편견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해석적 담론의 전형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민주화 이행기 5·18 담론 환경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이 국가 공식 담론의 지위를 잃고,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한 부분의 권력 담론으로 위치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시기 가해자들과 이를 변호하는 정치사회, 국가기구의 성원들은 부인 전략의 수립을 위해 국가기구를 동원한 5·11연구위원회로 대표되는 조직적 TF 설립, 5·18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조작, 폐기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들의 증언을 삭제, 누락, 수정시키는 통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주화이행기 가해자들의 공식 부인 전략의 핵심을 관통하는 사건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폭동'으로 수렴된다. 다만, 민주화 이전 시기 사건의 원인으로 제시된 배후론과 지역주의 담론 역시 여

전히 고수되고 있으나 북한이나 고정간첩, 간첩 같은 외부로부터 유래된 위협을 강조하는 논리는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넷째, 담론 내적 차원에서 이 시기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은 공식, 비공식 담론 영역에서 제기된 쟁점, 즉 ① 과잉 폭력, ② 발표, 집단발포, 자위권과 발포명령, ③ 민간인 학살, ④ 사건의 책임소재 중 계엄군 일부의 초기 진압 과정에서의 과잉 폭력 여부만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전략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민주화 이행기 가해자들의 부인이 5·18 당시 국가 공식 담론으로 생성된 ‘폭동’ 담론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자원은 이행기 과정에서 제시되는 근위대 문제(praetorian problem), 즉 ‘노골적으로 인권탄압을 저지른 권위주의 관료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서두에서 밝혔듯이 5·18 부인 담론의 재생산과 변화에 대한 논의는 민주화 이행기 출현해 공고화 과정에서 더욱 범위와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가해자들을 지지하는 그룹의 활동 양태와 담론 분석, 민주화 이후 최근까지 가해자들의 부인 담론 변화, 가해자들의 지위에 따른 부인 담론의 층위 분석 등이 요청된다. 특히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지자들의 부인 전략에 대한 분석은 이 같은 부인이 출현할 수 있는 구조와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주제에 따른 천착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5·18 부인 현상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의 종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서~~

참고문헌

- 강우진. 미간행. “5·18 41주년 기념 학술대회: 5·18과 도청 발표문.” 5·18 기념재단. 2021.11.12.
- 곽송연. 2014. “5·18광주와 국가의 지역주의담론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5a. “민주화 이전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정치 연구: 전두환 연설문에 나타난 5·18과 지역 주의 맥락모형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60호. 106-141.
- _____. 2015b. “5·18 당시 대중의 침묵에 관한 연구.” 『사립』. 53호. 393-419.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일 2022.6.16).
- 김보경. 2013.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 연구 :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기·채중훈·주정민. 2021.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튜브 왜곡영상 네트워크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21(1)호. 5-40.
- 김윤철. 202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사회적 부정 및 왜곡의 지속구조.” 『감성연구』. 22호. 269-305.
- 신일섭. 2005.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정치·사회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5(2)호. 173-201.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89호. 10-45.
- 안종철. 2007. “과거청산과 미해결 과제.” 『5·18 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도서출판 심미안.
- 염미경. 2001. “전쟁연구와 구술사: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동향과 전망』. 51호. 210-237.
- 오승용. 2012. “오늘의 5·18 쟁점과 진실.” 오승용·한선·유경남 편. 『5·18 왜곡의 기원과 진실』. 광주: 심미안. 23-63.
- 전재호. 2007. “5·18의 정치: 정치변동과 담론의 변화.” 『5·18 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도서출판 심미안.
- 조선일보사. 1999. 『총구와 권력』. 1999년 1월호 월간조선 별책부록.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코언, 스탠리. 2009.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조효제 역. 창작과 비평사.
 허시, 허버트. 2009.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강성현 역. 책세상.
 헌팅턴, 새뮤얼. 2011. 『제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강문구·이재영 역. 인간사랑.

Arthur, Paige. 2009. “How “Transitions” Reshaped Human Rights: A Conceptual History of Transitional Justice.” *Human Rights Quarterly*. 31(2). 321-367.
 Connerton, P.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irclough, Norman. 2001. *Language and power*. Harlow: Longman.
 Parent, Genevieve. 2016. “Genocide Denial: Perpetuating Victimization and the Cycle of Violence in Bosnia and Herzegovina (BiH).” *Genocide Studies and Preven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10(2). 38-58.
 Van Dijk, Teun A. 2009. *Society and discourse: How social contexts influence text and tal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dak, Ruth. 1996. *Disorders of discourse*. London : Longman.
<https://www.ictj.org/> 검색일 2022.5.16.

경향신문 1980/05/31; 2020/05/17.
 광주일보 2018/07/18; 2019/03/21; 2019/07/25.
 뉴시스 2021/05/16.
 동아일보 1988/4/1.
 아주경제 2021/09/29.
 중앙일보 2020/05/17.
 펜앤드마이크 2018/12/09; 2019/01/15; 2019/01/17; 2019/01/18.
 한겨레 1995/12/20.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 2018.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1998a.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11』.
-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1998b.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14』.

Abstract

The Perpetrators' denial strateg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nd Transitional justice

Kwag, Song yeon

Senior Researcher in Sogang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how the perpetrators' strategy to deny the legitimacy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which became the official discourse of State at the time, shift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related discourses during Korea's transition to democrac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ate discourse of denial at that tim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defined the nature of the incident as a riot, which was supported by two strategically constructed arguments: that the people were manipulated by hidden actors, and that the people were spurred by their long-held hostility based on regional discrimination. Second, even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o democracy, defining the nature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s a riot lay at the core of the perpetrators' denial strategy. Third, in response to the various issues raised by formal and informal discourses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only change that could be discerned from the perpetrators' denial strategy during this period was to partially acknowledge the use of excessive violence during the initial suppression of the protests. Conclusively, this study pinpoints the political failure to properly handle the authoritarian bureaucrats who explicitly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i.e., the praetorian proble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as

the reason why the perpetrators were firmly maintain their denial based on the discourse defining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s a riot.

■ **Keywords:** May 18 Democratic Uprising, Perpetrators, Denial Discourse, Crimes Against Humanity, Transitional Justice

투고: 2022.3.27. 심사: 2022.4.25. 확정: 2022.5.12.